- 201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-

행정사무감사 계획(안)

2016. 5.

행정건설위원회

201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

의 안 번 호	

제안일자 : 2016. 5.
제 안 자 : 행정건설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, 제52조 규정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마포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, 구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·개선함으로써 구민편익을 증진하고,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, 수집된 자료 및 정보를 자치입법 활동과 2017년도 예산심의에 활용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o 감사기간은 9일간으로 한다. (2016. 6. 11 ~ 2016. 6. 19)
o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 공보담당관, 감사담당관, 안전행정국, 기획경제국, 교통건설국 및 동 주민센터, 마포구시설관리공단, 마포문화재단으로 한다.
o 감사반 편성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(8명)으로 한다.
o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실, 동 주민센터로 한다

3. 관계법규

o「지방자치법」(법률 제12738호, 2015. 6. 4) 제41조
o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7056호, 2016.3.28)
제39조~제50조, 제52조
o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2조, 제5조 등

201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

1. 감사의 목적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, 제52조 규정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,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,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감사기간

2016. 6. 11(토) ~ 2015. 6. 19(일) [9일간]

3. 감사실시 대상기관

○ 마포구 (공보담당관, 감사담당관, 안전행정국, 기획경제국, 교통건설국)
○ 동 주민센터
○ 마포구시설관리공단, 마포문화재단

4.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감사위원</th><th>대상기관</th><th>감사장소</th><th>전문위원</th><th>사무직원</th></tr>
<tr><td rowspan="5">행정건설
위 원 회</td><td rowspan="5">행정건설
위원회
위원 전원
(8명)</td><td>공보담당관
감사담당관
안전행정국
기획경제국</td><td rowspan="2">행정건설
위원회실</td><td>김은모</td><td>조진남</td></tr>
<tr><td>교통건설국</td><td>송인수</td><td>신영자</td></tr>
<tr><td>동주민센터</td><td>해당 동주민센터</td><td rowspan="2">김은모</td><td rowspan="2">조진남</td></tr>
<tr><td>마포문화재단
마포구시설관리공단</td><td>행정건설
위원회실</td></tr>
</table>

5. 감사일정

일 정	내 용	비 고
2016. 6. 13(월)	o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	도화동, 상암동
2016. 6. 14(화)	o 안전행정국 행정사무감사 - 총 무 과 - 자치행정과 - 문화관광과 - 민원여권과 - 전산정보과 - 생활체육과	
2015. 6. 15(수)	o 기획경제국 행정사무감사 - 기획예산과 - 지역경제과 - 일자리진흥과 - 재 무 과 - 세 무 1과 - 세 무 2과	
2015. 6. 16(목)	o 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o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o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o 마포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	
2015. 6. 17(금)	o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 - 교통행정과 - 교통지도과 - 건설관리과 - 토 목 과 - 치 수 과 - 부동산정보과 o 감사종료 선언	

6. 감사요령

감사는 공보담당관, 감사담당관, 안전행정국, 기획경제국, 교통건설국의 각과 및 동 주민센터, 마포구시설관리공단, 마포문화재단별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, 서류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(증인)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.

7. 감사 진행순서

가. 감사실시 선언

나. 위원장 인사

다. 증인선서

라. 피감 부서장 인사 및 간부 소개

마. 업무보고 청취

바. 질의 · 답변

사. 감사종료 선언

8. 행정사항

가.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감사관련 자료를 수합한다.

나.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.